

재항고 이유서

사건: 2006모556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(박일환 대법관)

재항고인: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

상대방: 박홍우, 이상훈

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(이하 ‘이사건’, 2006. 10. 2. 통지 수령)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항고를 제기합니다.

재항고 이유서

1. [2006. 9. 28일자 재정신청에](#) 대하여, 형사 8부 허만 재판장은, ‘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하였다’고 볼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[기각결정](#)을 내렸습니다. 이와 같은 허만 판사의 결정은, [2006초기224](#)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(형사 3부)민일영 판사의 기각 사유와 동일한 고로, 이 사건의 재항고 이유 또한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, 재항고 이유는 첨부된 2006초기224의 재항고 이유와 같습니다.
2. 판사님들의 노고를 덜어 드릴까 하여, [2006초기224의 재항고](#) 사건 대법원 2006모428에 대한, [무논리 무법리 기각 결정문의](#) 복사본도 첨부하오니, 참고하기 바랍니다.

첨부 서류

1. [서울고법 2006초기224 사건의 재항고장](#)
2. [대법원 2006모428의 기각 결정문](#)

2006년 10월 24일

위 재항고인 김명호 (날인 또는 서명)

대법원 귀중